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대통령령 제24298호, 2013. 1. 9.)으로 인상된 숙박비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출장 소요비용에 미달하는 여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2013.12.12)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숙박비 지급 금액 조정

- 별표 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군수)
 - 당초 : 46,000원(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 변경 : 실비
 -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4급 이하)
- 당초 : 30,000원
- 변경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 밖의 지역 40,000원

○ 직종개편과 관련 변경사항 반영

- 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 일반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반영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생략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여비 조례는

인상된 숙박비와 직원들의 출장 시 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여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시켜 줌과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직종개편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직종개편 사항도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6조의 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4.11.11~11.30 (특이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